▶ 근로소득세액의 계산 흐름 (2024 vs 2025)

<table>
<tr><th>근로소득</th><th></th><th>2024년 연말정산</th><th>2025년 연말정산 (개정 후)</th></tr>
<tr><td></td><td>(-)비과세소득</td><td></td><td>•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한도 신설:
<u>Max(시가의 20%, 연 240만원)</u></td></tr>
<tr><td>총급여</td><td></td><td></td><td></td></tr>
<tr><td></td><td>(-)근로소득공제</td><td>
<table>
<tr><th>총급여액</th><th>공 제 액 (한도: 2천만원)</th></tr>
<tr><td>500만원이하</td><td>총급여액×70%</td></tr>
<tr><td>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td><td>350만원+
500만원초과액 × 40%</td></tr>
<tr><td>1,5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td><td>750만원+
1,500만원초과액 × 15%</td></tr>
<tr><td>4,500만원초과
1억원이하</td><td>1,200만원+
4,500만원초과액 × 5%</td></tr>
<tr><td>1억원초과</td><td>1,475만원+
1억원초과액 × 2%</td></tr>
</table>
</td><td>좌 동</td></tr>
<tr><td>근로
소득
금액</td><td>(-)인적공제 기본공제</td><td>•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 150만원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수급권자, 위탁아동(보호기간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td><td>좌 동</td></tr>
<tr><td></td><td>(-)인적공제 추가공제</td><td>• 경로우대(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한부모(100만원)
* 근로장려금과 부녀자공제 중복적용 허용</td><td>좌 동</td></tr>
<tr><td></td><td>(-)연금
보험료공제</td><td>• 국민연금보험료 및 공적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우체국연금보험료)
: 근로자부담분 전액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24.6.30까지 하한액 : 37만원, 상한액 : 590만원)
• 소득공제 항목 중 후순위로 공제</td><td>• 좌 동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u>(25.6.30까지 하한액 : 39만원, 상한액 : 617만원)</u>
• 좌 동</td></tr>
<tr><td></td><td>(-)특별공제 보험료</td><td>•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 근로자부담분 전액</td><td>좌 동</td></tr>
<tr><td></td><td></td><td>• 건강보험요율 : 보수월액의 7.09%
• 고용보험요율 : 보수총액의 1.8% (실업급여 기준)</td><td>좌 동</td></tr>
<tr><td></td><td>(-)특별공제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포함)</td><td>• Min[① + ② , 800만원(또는 600/1,800/2,000만원)]
① Min {(주택마련저축불입액+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40%, 400만원}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한도
<table>
<tr><td>만기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td><td>2,000만원</td></tr>
<tr><td>만기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td><td>1,800만원</td></tr>
<tr><td>만기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td><td>800만원</td></tr>
<tr><td>만기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td><td>600만원</td></tr>
</table>
* 고정금리 : 차입금의 70% 이상에 대한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
** 비거치식 :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td><td>좌 동</td></tr>
<tr><td></td><td></td><td>•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공제 요건
- 무주택 세대주</td><td>•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공제 요건
- 무주택 세대주</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 특별공제</td><td>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포함)</td><td>-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가능
- 무주택 외국인근로자도 공제가능
- 거주자간 차입 기준이자율: 3.5%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① 무주택자, 1주택자로서 대체 주택 취득자(외국인근로자 포함)
② 기준시가 6억원 이하 ('24년 이후부터)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마련저축)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한도 : 연간납입액 300만원</td><td>-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가능
- 무주택 외국인근로자도 공제가능
- 거주자간 차입 기준이자율: 3.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① 무주택자, 1주택자로서 대체 주택 취득자(외국인근로자 포함)
② 기준시가 6억원 이하 ('24년 이후부터)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마련저축)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 한도 : 연간납입액 300만원</td></tr>
<tr><td rowspan="3">(-) 그 밖의 소득공제</td><td>개인연금
저축공제</td><td>•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분)
: Min [불입액 × 40% , 72만원]</td><td>좌 동</td></tr>
<tr><td>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td><td>• 불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 공제한도 : Min[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table><tr><th>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th><th>공제한도</th></tr><tr><td>4천만원 이하</td><td>500만원</td></tr><tr><td>4천만원~1억원</td><td>300만원</td></tr><tr><td>1억원 초과</td><td>200만원</td></tr></table>• '16.1.1. 이후 가입하는 자부터는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16년 이후에 가입한 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법인대표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허용)</td><td>• 불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 공제한도 : Min[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table><tr><th>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th><th>공제한도</th></tr><tr><td>4천만원 이하</td><td>600만원</td></tr><tr><td>4천만원~6천만원</td><td>500만원</td></tr><tr><td>6천만원~1억원</td><td>400만원</td></tr><tr><td>1억원 초과</td><td>200만원</td></tr></table>• '16.1.1. 이후 가입하는 자부터는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16년 이후에 가입한 자 중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의 법인대표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허용)</td></tr>
<tr><td rowspan="2">(-) 그 밖의 소득공제</td><td>투자조합
출자 등</td><td>•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창업·벤처전문 PEF등 간접출자하는 경우
: 투자금액 × 10%

•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 3,000만원 이하분 : 투자금액 × 100%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 투자금액 × 70%
- 5,000만원 초과분 : 투자금액 × 30%

•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함</td><td>좌 동</td></tr>
<tr><td>신용카드
등
사용금액</td><td>※ 공제대상금액
- 재화 및 용역 구입시 신용카드 등 사용분
- 전기·수도료,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 물품은 제외
- 중고차 구입 금액의 10%는 사용액에 반영
- 면세점 사용금액 제외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율을 곱하며, 최저사용금액은 아래의 ①,②,③,④,⑤,⑥의 역순부터 적용한다.

※ 공제율
① 대중교통 사용액 : 40%
② 전통시장 사용액 : 40%
③ 도서공연 등 사용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30%
④ 현금영수증 사용액 : 30%
⑤ 직불카드 등 사용액 : 30%
⑥ 신용카드 등 사용액 : 15%

※ 공제액 계산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초과사용금액 × 공제율
+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전체소비분) × 10%</td><td>좌 동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율을 곱하며, 최저사용금액은 아래의 ①,②,③,④,⑤,⑥의 역순부터 적용한다.

※ 공제율
① 대중교통 사용액 : 40%
② 전통시장 사용액 : 40%
③ 문화체육 사용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30%
④ 현금영수증 사용액 : 30%
⑤ 직불카드 등 사용액 : 30%
⑥ 신용카드 등 사용액 : 15%

* 문화체육 사용액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포함 ('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 공제액 계산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초과사용금액 × 공제율</td></tr>
</table>

과세표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 한도액: ①+② ① 기본한도(급여수준별 차등적용)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② 추가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Min[기본한도초과액, 전통시장사용분×공제율+대중교통이용분×공제율+도서공연등사용분×공제율, 300만원] + Min[기본한도초과액-추가공제금액, 소비증가분공제액, 100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 Min[기본한도초과액, 전통시장사용분×공제율+대중교통이용분×공제율, 200만원] + Min[기본한도초과액-추가공제금액, 소비증가분공제액, 100만원]	2. 한도액: ①+② ① 기본한도(급여수준별 차등적용)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② 추가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Min[기본한도초과액, 전통시장사용분×공제율+대중교통이용분×공제율+문화체육사용분×공제율, 300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 Min[기본한도초과액, 전통시장사용분×공제율+대중교통이용분×공제율, 200만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Min [당해연도 출연금 , 400만원 또는 1,500만원*] (*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되는 경우)	좌 동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Min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1,000만원]	좌 동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 가입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공제대상 요건은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 펀드요건(2015.12.31까지 가입분) ①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펀드 ② 연 납입한도 : 600만원 ③ 계약기간 10년 이상 • 공제금액 :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좌 동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 가입대상 : 청년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공제대상 요건은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 펀드요건(2024.12.31.까지 가입분) ① 자산총액 4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펀드 ② 연 납입한도 : 600만원 ③ 계약기간: 3년이상 5년이하 • 공제금액 : 계약기간동안 연 납입액의 40%	• 가입대상 : 청년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공제대상 요건은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 펀드요건(2025.12.31.까지 가입분) ① 자산총액 4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펀드 ② 연 납입한도 : 600만원 ③ 계약기간: 3년이상 5년이하 • 공제금액 : 계약기간동안 연 납입액의 40%
		• 소득공제 종합한도 : 2천5백만원 • 한도 적용 소득공제 : 주택자금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우리사주조합출자, 투자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좌 동
(×)기본세율		과세표준 / 세율 1,400만원이하 / 6% 1,4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 84만원+1,400만원 초과액 × 15% 5,0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 624만원+5,000만원 초과액 × 24%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 1,536만원+8,800만원 초과액 × 35% 1억5천만원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3억원 초과액 × 40%	좌 동

산출세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5억원 초과액 × 42%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45%	
	(-) 세액공제·감면	세액감면	ㅇ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22.12.31 이전 국내 최초 근로제공자): 3년간 70%, 2년간 50% 감면 • 그 외 외국인 기술자: 10년간 50% 감면 • 대상자 :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 등 • 내국인 중 외국 영주권자에 대한 적용: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좌 동
			ㅇ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 법정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중소기업에 재취업, 이직뿐만 아니라 합병, 분할 등의 경우 포함)하는 자 - 청년 -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단, 2014년 1월 1일부터 취업한 경우에 한함) - 경력단절 여성 (단,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종업종 중소기업에 재취업 하는 경우를 말함) • 기타고려사항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적용배제 -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닌자는 감면대상(의료수급자 등 건강보험가입대상 제외자 감면적용) • 감면기간 : 취업 후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간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5년→7년) • 감면율* :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70%(청년 90%) 감면 (한도 200만원) * 감면율 경과규정 - ~~'13.12.31 이전에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 등 : 100% 적용~~ (감면기간 만료) - ~~'15.12.31 이전에 중소기업 취업한 자(청년제외) : 50% 적용~~ (감면기간 만료) - '16.1.1 이후에 중소기업 취업한 자(청년제외) : 70% 적용 - '18.1.1. 이후에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 & '18년 기준 중소기업 취업 5년 미경과한 청년 : 90% 적용	ㅇ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 법정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중소기업에 재취업, 이직뿐만 아니라 합병, 분할 등의 경우 포함)하는 자 - 청년 -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단, 2014년 1월 1일부터 취업한 경우에 한함) - **경력단절자** (단, **경력단절자**의 경우에는 ~~동종업종~~ 중소기업에 재취업 하는 경우를 말함) 좌 동
			• 정부간 협약에 따라 파견된 외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세액감면	좌 동
			• 조세조약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	좌 동
			•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성과보상금 중 기업 기여금 감면율 상향 •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90%, 그 외 50% • 중견기업 근로자: 청년 50%, 그 외 30%	좌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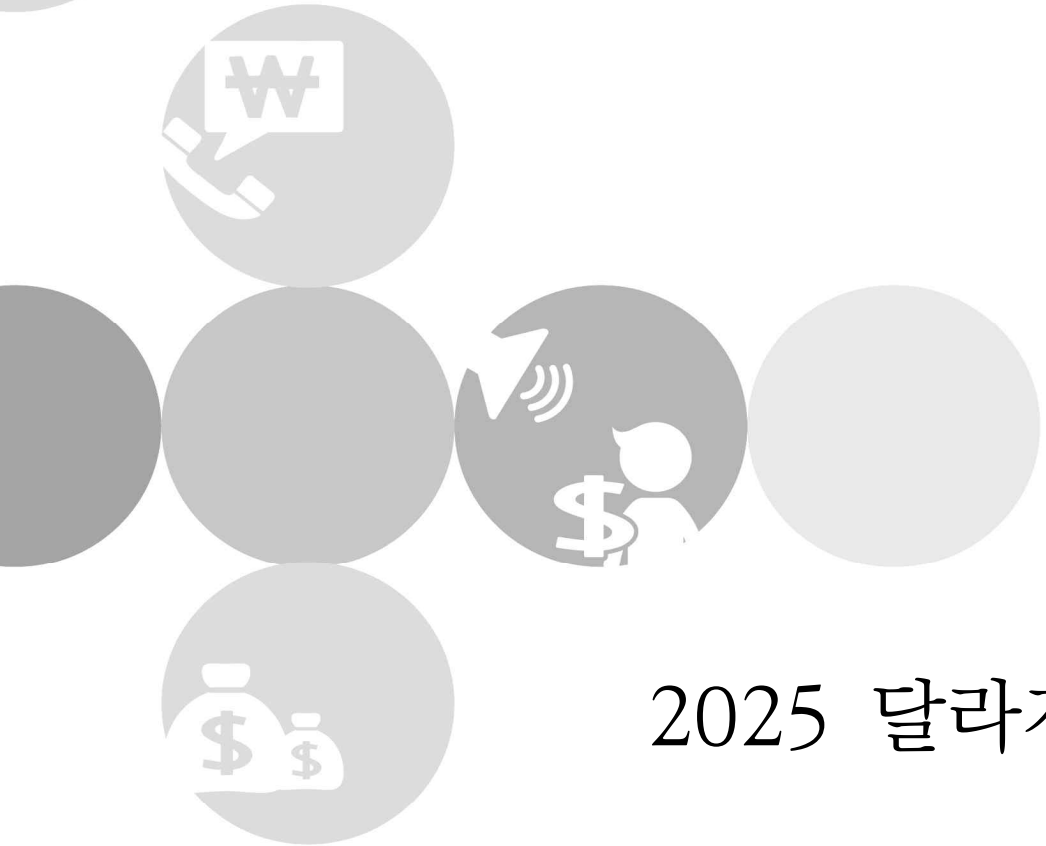
<table>
<tr><td rowspan="5">(-)
세액
공제
·
감면</td><td>세액감면</td><td>• 성과공유 중소기업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 2024.12.31.까지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경영성과급 소득세 50% 감면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또는 최대주주 등 제외</td><td>• 성과공유 중소기업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 2027.12.31.까지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경영성과급 소득세 50% 감면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또는 최대주주 등 제외</td></tr>
<tr><td></td><td>•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td><td>좌 동</td></tr>
<tr><td>근로소득세액공제</td><td>ㅇ 공제구간
<table><tr><th>산출세액</th><th>공제액</th></tr><tr><td>130만원 이하</td><td>산출세액의 55%</td></tr><tr><td>130만원 초과</td><td>71만5천원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td></tr></table>ㅇ 공제한도
<table><tr><th>총급여액</th><th>공제한도</th></tr><tr><td>33백만원 이하</td><td>74만원</td></tr><tr><td>7천만원 이하</td><td>74만원
-(총급여액-33백만원)×8/1000
* 단 최저 66만원</td></tr><tr><td>7천만원 초과</td><td>66만원
-(총급여액-70백만원)×1/2
* 단 최저 50만원</td></tr><tr><td>1.2억원 초과</td><td>50만원
-(총급여액-1.2억원)×1/2
* 단 최저 20만원</td></tr></table></td><td>좌 동</td></tr>
<tr><td>결혼세액공제</td><td>ㅇ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ㅇ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ㅇ 세액공제금액: 50만원</td><td>좌 동</td></tr>
<tr><td>자녀세액공제</td><td><table><tr><th colspan="2">구분</th><th>공제금액</th></tr><tr><td rowspan="3">기본</td><td>자녀 1명</td><td>15만원</td></tr><tr><td>자녀 2명</td><td>35만원</td></tr><tr><td>자녀 2명초과</td><td>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td></tr><tr><td>추가</td><td>출생 · 입양</td><td>- 첫째는 30만원
- 둘째는 50만원
- 셋째이상 70만원</td></tr></table>※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및 손자녀 중 만 8세이상의 사람에 대해 기본자녀세액공제 적용
※ 자녀장려금과 중복적용 배제</td><td><table><tr><th colspan="2">구분</th><th>공제금액</th></tr><tr><td rowspan="3">기본</td><td>자녀 1명</td><td>25만원</td></tr><tr><td>자녀 2명</td><td>55만원</td></tr><tr><td>자녀 2명초과</td><td>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td></tr><tr><td>추가</td><td>출생 · 입양</td><td>- 첫째는 30만원
- 둘째는 50만원
- 셋째이상 70만원</td></tr></table>※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및 손자녀 중 만 8세이상의 사람에 대해 기본자녀세액공제 적용
※ 자녀장려금과 중복적용 배제</td></tr>
<tr><td>연금계좌
세액공제</td><td>• 공제한도 및 공제율
<table><tr><th>총급여</th><th>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퇴직연금 또는 ISA퇴직연금 합산시 한도)</th><th>공제율</th></tr><tr><td>5.5천만원 이하</td><td rowspan="2">600만원(900만원)
+min(ISA납입액×10%, 300만원)</td><td>15%</td></tr><tr><td>5.5천만원 초과</td><td>12%</td></tr></table>* 기존 연금계좌 한도 초과시 ISA납입 금액의 10% 한도 추가(최대 300만원)
** 연금계좌 공제한도 차감순서 : 퇴직연금 〉 연금저축 〉 ISA퇴직연금〉 ISA연금저축 순

•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 공제</td><td>좌 동</td></tr>
</table>

(-) 세액공제 · 감면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 보장성보험료(100만원한도) : 12% • 장애인보장성보험료(100만원한도) : 15%	좌 동
		의료비	본인 등 의료비(A)+Min(그 밖의 의료비(B)-총급여액 ×3%, 700만원)] : 15%* * 단, 난임시술비는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 본인 등 의료비(A)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 소득불문) 중 본인 · 65세이상자 · 6세 이하자 · 장애인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 당해 의료비 전액(단, 아래(B)의 금액이 "-"이면 그 금액을 차감) • 그 밖의 의료비(B)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 소득불문) 중 본인 · 65세이상자 · 6세 이하자 · 장애인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이외의 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 Min(당해 의료비-총급여액×3%, 700만원)	좌 동
		교육비	• 교육비 지출액 : 15% [한도 : 초중고생(300만원), 대학생(900만원), 본인(한도없음)]	좌 동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 100/110 - 10만원 초과 : 15% (3,000만원 초과분 25%)	좌 동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이하 : 100/110 -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15%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이하 : 100/110 -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5%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0%)**
			• [특례+우리사주+일반] 기부금 : 15% (1,000만원 초과분 30%, 3천만원 초과분 40%) • 기부금별 한도 산식 - 특례기부금한도 : (근로소득금액-선순위공제대상 기부액) × 10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한도 : (근로소득금액-선순위공제대상 기부액) × 30% - 일반기부금한도 : (근로소득금액-선순위공제대상 기부액) × 30%* * 종교기부금의 경우 10% 로 함 •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 특례기부금 10년 - 일반기부금 10년 • 부양가족 기부금의 공제요건 - 소득요건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기부장려금과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단,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익년도 6월말) 경과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 적용)	• [특례+우리사주+일반] 기부금 : 15% (1,000만원 초과분 30%, ~~3천만원 초과분 40%~~) 좌 동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보험료 등·주택자금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13만원	좌 동

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납세조합 세액공제	• 납세조합 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 • 한도 = 100만원 × (근로제공월수 ÷12)	• 납세조합 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 • 한도 = 100만원 × (근로제공월수 ÷12)
		주택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당해 연도 이자상환액 × 30%	좌 동
		외국납부 세액공제	• min(①,②) ① 다음의 산식에 따른 금액 $\text{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 - \text{면제·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 \times \text{면제·감면비율}}{\text{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② 외국에 납부한 세액 또는 외국에 납부할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 제외)	
			• 한도 계산방식 : 국별한도 방식만 허용 - 국별한도 :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 - 일괄한도 :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 • 한도 초과액 발생시 10년간 이월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세액계산서) 제출기한 - 원칙 :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 예외 : 외국정부 통지 지연시 등의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좌 동
		월세액 세액 공제	•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시 적용배제)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준주택) 또는 고시원같은 다중생활시설(준주택)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율*에 따라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17% - 위 외의 근로자: 15%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① 무주택 세대주(무주택 세대원,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 ② 계약서상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③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지급할 것	좌 동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19% - 제외 : 고용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 - 적용기한 : 국내 최초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23.1.1.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함)	좌 동
	(-)기납부세액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24.3.1 시행) (2024.3.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	좌 동
	(-)납부특례세액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얻는 이익에 대하여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결정세액 • 적용기한 : '24.12.31. • 5년간 세액의 1/5을 매년 납부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얻는 이익에 대하여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결정세액 • 적용기한 : '27.12.31. • 5년간 세액의 1/5을 매년 납부
			•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분납 허용 -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2월부터 4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3개월)	좌 동

차감징수세액			
기타의 사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좌 동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좌 동
	연말정산기간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지급일까지	좌 동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 일부 비과세는 제외하고 제출	좌 동
지방소득세		• 독립세로 전환	좌 동
농특세		• 농어촌특별세 대상 공제항목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16년도부터 제외)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15년도부터 제외) - 주택차입금세액공제	좌 동



Part 1

2025 달라지는 법률

세법

4대보험

노동법

Part 1. 2025 달라지는 법률 _ 목차

구분	내 용 및 Page
세법	**Ⅰ. 소득세 분야 개정사항** ····· 12
	▶ 비과세 및 원천징수 ····· 12
	1.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제외 특수관계자 범위 등 ····· 12
	2.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 14
	3.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금액 및 재판매 금지기간 규정 ····· 16
	4. 종업원 할인혜택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범위 규정 ····· 17
	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19
	6.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 21
	7.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 22
	8.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보완('26년 시행) ····· 23
	9. 퇴직소득세액 정산절차 보완('26년 시행) ····· 25
	▶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 27
	1.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 27
	2.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 ····· 28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요건 합리화 ····· 30
	4. 거주자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 32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명확화 ····· 33
	6.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 35
	7.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 ····· 37
	8.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 ····· 38
	9.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40
	10.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 42
	11.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확대 ····· 44
	12.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 ····· 45
	13.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46
	14.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48
	15.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 49

구분	내 용 및 Page
	16.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 ····· 51 17.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 52 18.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간 구체화 ····· 53 19.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 ····· 55 20. 혼인무효 시 혼인세액공제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등 ····· 57 21.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혼인세액공제 추가 ····· 59 22.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 6 23.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 62 24.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보유자) 소득세 감면 ····· 64 25.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66 26.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 67 27.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요건 보완 ····· 69 2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정비 ····· 71 29.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73 30.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75 **▶ 그밖의 개정사항 ····· 77**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77 2.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 78 3.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안) ····· 79
4대보험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및 상한액 조정 ····· 80 2. 건강보험 보수월액 보험료 및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조정 ····· 81
노동법	1. 최저임금액 인상 ····· 82

세 법

01

Ⅰ. 소득세 분야 개정사항

▶ 비과세 및 원천징수

1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제외 특수관계자 범위 등

(소득령 §17의2 신설)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제외 대상 ㅇ (개인사업자) 해당 개인 사업자 및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 ㅇ (법인)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친족관계(국기법 §2)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법인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
〈신 설〉	□ 기업출산지원금 지급횟수 적용기준 ㅇ 출산지원금을 3차례 이상 지급받은 경우: 최초 지급분과 그 다음 지급분까지만 비과세 금액으로 인정 ㅇ 이직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별로 최대 2회 지급횟수 적용 (이직 시 이직 전에 지급받은 횟수 미합산)

〈개정이유〉 출산·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머목 1)에서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025. 2. 28. 신설)

1.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025. 2. 28. 신설)
2.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관계 (2025. 2. 28. 신설)

② 법 제12조 제3호 머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란 사용자로부터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횟수에 관계 없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한다. (2025. 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이하 생략〉

[출산지원금 비과세 요건 정리]
1.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 & 2회 이내 지급분까지 비과세
2.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제외
3. 이직한 경우, 이직 전에 지급받은 출산지원금 횟수 미합산 (횟수는 회사별로 따로 계산)

[사례] 직원 최OO은 2024년 9월 1일에 자녀를 출산하였다.

① A회사 근무 중
- 2024년 10월 급여에 출산지원금 50만원 지급 (A회사 첫 번째 지급 → 비과세)
- 2025년 1월 급여에 출산지원금 50만원 지급 (A회사 두 번째 지급 → 비과세)

② B회사로 이직 후
2025년 5월 급여 시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급 (B회사 첫 번째 지급 → 비과세)

이렇게 합산하면 총 3회 지급이지만,
- A회사에서 지급한 2회는 A회사 기준 첫 번째·두 번째 지급분,
- B회사에서 지급한 1회는 B회사 기준 첫 번째 지급분이므로,
모두 비과세 가능하다.

→ 즉, 근로자가 이직을 여러 번 하더라도 각 회사별로 2회까지 비과세 적용 가능

2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법 §12(3), §20①)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 종업원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o (종업원등)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o (대상금액) 종업원등이 자사·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 * 할인적용 전 판매가격 또는 쇼핑몰 등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o (적용요건)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 할인금액 중 비과세금액 o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o (비과세대상 요건) ❶ 종업원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❷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❸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개정이유〉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중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중략〉
처.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2024. 12. 31. 신설)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 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

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2024. 12. 31. 신설)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2024. 12. 31. 신설)

〈중략〉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중략〉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2024.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칙 (2024. 12. 31. 법률 제206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임원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3호처목 및 제20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종업원 할인금액 적용 사례]

□ (사례1) A 자동차 회사는 종업원에게 판매가격(4,000만원)의 25% 할인, 종업원 甲은 25% 할인받아 3,000만원에 구매

→ 甲의 할인금액(1,000만원),
비과세 한도 = Max[시가의 20%, 240만원] : 800만원

→ 할인금액 1,000만원 중 800만원은 비과세 & 나머지 200만원은 과세

□ (사례2) B 전자제품 회사는 종업원에게 판매가격(300만원)의 30% 할인, 종업원 乙은 30% 할인받아 210만원에 구매

→ 乙의 할인금액(90만원),
비과세 한도 = Max[시가의 20%, 240만원] : 240만원

→ 할인금액이 90만원이 비과세 한도(240만원)보다 작으므로 전액 비과세

3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금액 및 재판매 금지기간 규정

(소득령 §17의5 신설)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ㅇ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 연간 구입한 모든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기준 ㅇ (비과세 요건) 일정기간 재판매 금지기간을 지급기준 등에 규정 ❶ (자동차·대형가전·고가재화[1]」 등[2]」) 2년 1」「개소법」 §1②(2)의 귀금속제품·고급시계·고급융단·고급가방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품목 ❷ (그 외 재화) 1년

〈개정이유〉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5 【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처목 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2025. 2. 28. 신설)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제38조 및 제55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2025. 2. 28. 신설)
2. 연간 240만원 (2025. 2. 28. 신설)

② 법 제12조 제3호 처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025. 2. 28. 신설)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재화: 2년 (2025. 2. 28. 신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재화: 2년 (2025. 2. 28.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1년 (2025. 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4 종업원 할인혜택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범위 규정

(소득령 §38③)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할인혜택의 유형 및 시가의 판단기준 ㅇ 종업원 할인혜택의 유형 ❶ 자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❷ 자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임원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❸ 계열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가 자사의 임원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❹ 계열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자사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자사가 임원등이 할인받은 금액을 계열사에 지급하여 주는 경우 ㅇ 시가의 판단기준 - (원칙) 법인령 §89(시가의 범위)에 따름 - (예외) 일반소비자에게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해당 종업원이 아니면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 할인금액을 시가로 판단 가능 * (예) 파손·변질상품, 사용 유효기한이 임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숙박권·탑승권 등

〈개정이유〉 근로소득인 종업원 할인금액의 범위 구체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중략〉
③ 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한다. (2025. 2. 28. 신설)
1.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자사제품등"이라 한다)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방식 (2025. 2. 28. 신설)
2.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자사제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2025. 2. 28. 신설)
3.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제품등"이라

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2025. 2. 28. 신설)

4.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가 사업자나 법인의 임원등에게 계열회사제품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고, 사업자나 법인이 그 계열회사에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 (2025. 2. 28. 신설)

④ 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등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때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 (2025. 2. 28. 신설)

1. 재화의 파손 또는 변질로 인해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 (2025. 2. 28. 신설)
2. 탑승권 및 숙박권 등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025. 2. 28.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의2①, §16의3①, §16의4①)

개 정 전	개 정 후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❶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16의2) - (대상) 비상장·코넥스 상장 - (특례내용)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 – 매수가액) 연간 2억원 한도* 비과세 * 벤처기업별 총 누적한도 5억원 ❷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 특례(§16의3) - (대상) 비상장·상장 벤처기업 - (특례내용) 행사이익(§16의2에 따른 비과세 이익 제외)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❸ 적격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16의4) * 3년간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이하, 행사후 1년간 보유 등 -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 (특례내용) 행사시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 (양도가액 – 행사가액)으로 납부 가능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적용기한) ’24.12.31.	□ ’27.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

관련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 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 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024. 12. 31. 개정)

〈중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 2 또는 제542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 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12. 31. 개정)

〈중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2024.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24. 12. 31. 법률 제206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6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조특법 §91의22③)

개 정 전	개 정 후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추징요건 완화
ㅇ (가입요건) ❶만 19~34세, ❷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ㅇ (과세특례)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ㅇ (좌 동)
ㅇ (납입한도) 연 840만원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ㅇ (추징)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비과세 적용받은 상당세액 추징	ㅇ 5년 → 3년
-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미추징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혼인·출산 등	- (좌 동)

〈개정이유〉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중략〉
③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 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4.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24. 12. 31. 법률 제206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중략〉

제13조【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2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7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소득법 §129①)

개 정 전	개 정 후
□ 거주자의 원천징수(예납적) 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 ㅇ 지급액의 3% - 다만,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직업운동가: 20%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확대 ㅇ (좌 동) - 외국인 직업운동가: 20% *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적용

〈개정이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중략〉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2024. 12. 31. 단서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칙 (2024. 12. 31. 법률 제206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중략〉

제1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생략〉

8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보완('26년 시행)

(소득령 §202의2·§203)

개 정 전	개 정 후
□ 정산시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보완
ㅇ 퇴직소득세액 = ❶ - ❷	ㅇ (좌 동)
❶ 전체 퇴직금* 산출세액 * 기지급퇴직금 + 지급할 퇴직금 ** 전체 근속연수(중복기간 제외)로 연분연승법 등 적용	❶ (좌 동)
❷ 기지급 퇴직금 산출세액* * 이미 납부·이연된 세액을 공제	❷ 재계산된 이연퇴직소득세액 + 기납부세액 ※ 재계산된 이연퇴직소득세액 = 전체 퇴직소득 산출세액 × (정산 전 이연퇴직소득(정산 전 수령분 제외) / 전체 퇴직소득) ※ 기납부세액(=①+②) ① 정산 전까지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 ②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전액 연금외수령을 가정한 원천징수세액을 의미함)

〈개정이유〉 퇴직소득 정산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④ 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 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제203조 제5항 전단에 따라 계산한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으로 하고,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및 인출퇴직소득 누계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2025. 2. 28. 신설)

〈중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이하 "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25. 2. 28.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자는 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때 연금계좌취급자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연금계좌취급자로 하여금 해당 연

금계좌 현황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게 해야 한다. (2025. 2. 28. 신설)

$$A - (B + C + D)$$

A: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B: 정산전이연퇴직소득세액*

C: 정산 전까지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법 제1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환급된 원천징수세액 및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한다)

D: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을 전액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 정산전이연퇴직소득세액 $= E \times \frac{F}{G}$

E: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F: 정산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 누계액에서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 누계액을 뺀 금액

G: 퇴직소득누계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2025. 2. 28. 개정)

④ 법 제1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25. 2. 28. 항번개정)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계산식 중 정산전이연퇴직소득세액과 정산 시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에 대해 제202조의 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이라 한다)을 계산하고,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연금계좌에 있거나 입금될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계좌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은 전체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연금계좌별 이연퇴직소득(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제외한다)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2025. 2. 28. 신설)

⑥ 제5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계좌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제2항 후단에 따른 연금계좌 현황자료 작성 및 제202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반영해야 한다. (2025. 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3항, 제53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제187조의 3 제2항, 제202조의 2 제4항, 제203조, 제216조의 2 제1항 및 별표 3의 3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중략〉

제19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2조의 2 제4항 및 제20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제43조 제2항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9 퇴직소득세액 정산절차 보완('26년 시행)

(소득령 §203)

개 정 전	개 정 후
□ 퇴직소득세액 정산절차	□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정산절차 보완
ㅇ 퇴직자가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ㅇ (좌 동)
〈신 설〉	- 단,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름 ❶ 퇴직자가 기 지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연금계좌취급자 직접 제출도 가능 ❷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❸ 이연퇴직소득세액 변경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 * 다수 계좌 보유시 각 계좌별 이연퇴직소득 비율로 안분 ❹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 반영

〈개정이유〉 퇴직소득 정산 시 과세집행을 위한 절차 마련
〈적용시기〉 '26.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이하 "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25. 2. 28.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자는 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때 연금계좌취급자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연금계좌취급자로 하여금 해당 연

금계좌 현황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게 해야 한다. (2025. 2. 28. 신설)

$$A - (B + C + D)$$

A: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B: 정산전이연퇴직소득세액*

C: 정산 전까지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법 제1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환급된 원천징수세액 및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한다)

D: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을 전액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 정산전이연퇴직소득세액 $= E \times \frac{F}{G}$

E: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F: 정산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 누계액에서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 누계액을 뺀 금액

G: 퇴직소득누계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2025. 2. 28. 개정)

④ 법 제1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25. 2. 28. 항번개정)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계산식 중 정산전이연퇴직소득세액과 정산 시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에 대해 제202조의 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이라 한다)을 계산하고,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연금계좌에 있거나 입금될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계좌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은 전체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연금계좌별 이연퇴직소득(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제외한다)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2025. 2. 28. 신설)

⑥ 제5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계좌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제2항 후단에 따른 연금계좌 현황자료 작성 및 제202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반영해야 한다. (2025. 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3항, 제53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제187조의 3 제2항, 제202조의 2 제4항, 제203조, 제216조의 2 제1항 및 별표 3의 3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중략〉

제19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2조의 2 제4항 및 제20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제43조 제2항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1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소득법 §50①(3))

개 정 전	개 정 후
□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 나이요건 명확화
ㅇ (대상요건) 거주자의 직계비속	ㅇ (좌 동)
ㅇ (나이요건) 20세 이하	ㅇ 20세 이하(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개정이유〉 조문 정비

관련법조문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중략〉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2015. 12. 15.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009. 12. 31.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2024.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칙 (2024. 12. 31. 법률 제206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중략〉

2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 (소득령 §107①·②)

개 정 전	개 정 후
□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 범위 명확화
❶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❷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	ㅇ (좌 동)
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❸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
□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인정 서류	□ 장애인에 대한 증빙 인정 서류 범위 확대
ㅇ 장애인증명서	ㅇ (좌 동)
〈추 가〉	ㅇ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에 한함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장애인 범위 명확화)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장애인에 대한 증빙 인정 서류 범위 확대) '26.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18. 2. 13. 개정)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018. 2. 13. 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2018. 2. 13. 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

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5. 2. 28. 신설)

4. (삭제, 2025. 2. 28.)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으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법 제165조 제1항 및 이 영 제216조의 3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025. 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중략〉

제10조【장애인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요건 합리화

(소득령 §112④)

개 정 전	개 정 후
□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 대환대출시에도 적용
○ (적용대상) 무주택자	○ (좌 동)
○ (공제율)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연 400만원	
○ (임차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 (공제요건) ❶·❷·❸ 모두 충족	
❶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및 주택금융공사등*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도시기금, 여신전문 금융회사, 지방보훈청	
❷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추 가〉	- 대출기관을 통한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을 기준으로 판단
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❸ (좌 동)
〈추 가〉	-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간 정산되어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절차 불필요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중략〉

④ 법 제52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2015. 2. 3. 개정)

1.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이하 이 항에서 "대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025. 2. 28. 개정)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제5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전입일등"이라 한다)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종전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이하 이 호에서 "대환대출"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환대출 전에 최초로 차입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다]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2025. 2. 28. 개정)

나. 차입한 자금(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환대출 전에 최초로 차입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다)이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025. 2. 2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중략〉

제11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4 거주자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칙 §57)

개 정 전	개 정 후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이자율 하향
ㅇ 연 3.5%	ㅇ 연 3.5% → 3.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2025.3.2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를 말한다. (2025. 3. 2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중략〉

제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공제 관련 이자율 요건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명확화

(소득령 §112⑨)

개 정 전	개 정 후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명확화
ㅇ (공제한도) 600~2,000만원	ㅇ (좌 동)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 고정금리 외): 2,000만원 / 1,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600만원	
ㅇ (거치기간) 없음	ㅇ 1년 이내
ㅇ (공제요건) 상환기간*동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차입금 상환	ㅇ 상환월수에 비례하여 매년 상환하는 금액 기준 명확화
- 매년 상환금액 : $\frac{\text{차입금의 100분의 70}}{\text{상환기간 연수}}$	- 매년 상환금액 : $\frac{\text{차입금의 100분의 70}}{\text{상환기간 연수}} \times \frac{\text{해당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월수}}{12}$
*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정이유〉 세액공제 요건 명확화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관련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중략〉

⑨ 법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거치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2025. 2. 28. 개정)

$$\frac{\text{차입금의 100분의 70}}{\text{상환기간 연수}} \times \frac{\text{해당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월수}}{1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6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87)

개 정 전	개 정 후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대상 확대
ㅇ (대상)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ㅇ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소득요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ㅇ (좌 동)
ㅇ (소득공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납입한도 연 300만원)	
ㅇ (적용기한) '25.12.31.	

〈개정이유〉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소득공제)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2014. 12. 23. 제목개정)

〈중략〉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 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4. 12. 31. 개정)

〈중략〉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23. 12. 31. 개정)

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2024. 12. 31. 개정)

〈중략〉

④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 확인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4. 12. 31. 개정)

〈중략〉

⑤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4. 12. 31. 후단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24. 12. 31. 법률 제206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중략〉

제12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87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인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주의 배우자는 제8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7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

(조특령 §14④)

개 정 전	개 정 후
□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식 *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5천만원: 70% 5천만원 초과: 30% ○ A × B (A) 거주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B)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등 투자 비율*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 출자액 총액	□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 ○ A × B - C (A) 거주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누적액 (B)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등 누적투자 비율*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누적금액 ÷ 개인투자조합 출자액 총액 (C) 소득공제 기 적용된 투자액

〈개정이유〉 벤처투자 소득공제 계산 명확화

관련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2020. 8. 11. 제목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중략〉

④ 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날(해당 과세연도에 여러 번 투자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5. 2. 28. 개정)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누적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누적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소득공제가 이미 적용된 투자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8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

(조특령 §14⑩)

개 정 전	개 정 후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사유	□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
ㅇ (원칙) 출자·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자·투자지분 이전·회수 등 발생	ㅇ (좌 동)
ㅇ (예외)	ㅇ 예외사유 추가
- 출자·투자자의 사망 - 세대 전원 해외이주 -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발생 - 벤처투자조합 등* 해산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자	(좌 동)
〈추 가〉	- 투자한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한 경우 등으로서 투자일로부터 1년 이후 개인투자조합 해산

〈개정이유〉 벤처투자 선순환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2025.2.28.) 이후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2020. 8. 11. 제목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중략〉

⑩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20. 2. 11. 항번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005. 2. 19. 개정)
2. 천재 · 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항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후 해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5. 2. 28. 개정)
4.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025. 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중략〉

제5조【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 이전·회수 등의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 제10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 제10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9 수영장 ·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조특법 §126의2②)

개 정 전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기본공제)

- (공제율) 결제수단별 차등

구 분	공제율
❶ 신용카드	15%
❷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30%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추가공제)

- (공제율)

항 목	공제율
❶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
❷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 영화관람료* 〈추 가〉	30%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200만원

○ (적용기한) '25.12.31

개 정 후

□ 추가공제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추가공제 항목 추가

- (공제율)

항 목	공제율
❶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
❷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 영화관람료* - 수영장 ·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30%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서민 · 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023. 12. 31. 개정)

〈중략〉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문화체육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2024. 12. 31. 개정)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신문·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신문·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 12. 31. 개정)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12. 31. 개정)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이용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24. 12. 31. 법률 제206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6조 제5항 및 제107조의 2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106조의 11, 제108조의 3 및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 다목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중략〉

제23조【체육시설이용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10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조특령 §121의2, 조특칙 §52의3③)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ㅇ (대상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ㅇ (공제대상)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 운동 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제외* * 시설이용료와 강습비 등 비용의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비율(50%)만큼을 시설이용료로 인정

〈개정이유〉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02. 12. 30. 제목개정)
〈중략〉
⑯ 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 다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말한다. (2025. 2. 28. 신설)
⑰ 체육활동을 위한 개인강습비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이하 이 항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체육시설이용분으로 한다. (2025. 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영 제121조의2제17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전단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서 영 제121조의2제17항 본문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25. 3. 21. 신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략〉
2. 제106조의 15, 제121조의 2 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2025. 3. 21. 기획재정부령제 11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8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48조의 7 및 제52조의 3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이하 생략〉

11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확대

(조특령 §121의5②·⑧)

개 정 전	개 정 후
□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 * 소비자가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등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가능	□ 신청기한 확대
ㅇ (신청기한)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ㅇ 3년 → 5년
ㅇ (신청방법) 현금거래확인 신청서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세원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5【현금거래의 확인 등】
〈중략〉
② 법 제126조의 5 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5. 2. 28. 개정)
〈중략〉
⑧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7항의 현금영수증시스템 입력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력내용을 조회한 결과 현금거래수입금액 명세가 누락되거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입력된 것을 안 때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2항을 준용하여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2025. 2. 28.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중략〉

제19조【현금거래 사실 확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5 제2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현금거래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2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1의20①)

개 정 전	개 정 후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ㅇ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분	ㅇ '25.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관련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24. 12. 31. 개정)

〈중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24. 12. 31. 법률 제206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13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86의3①)

개 정 전	개 정 후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ㅇ (공제부금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ㅇ (좌 동)
ㅇ (공제적용 소득) ❶ 또는 ❷	ㅇ 법인대표자 적용기준 완화
❶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❶ (좌 동)
❷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	❷ 총급여 7천만원 →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ㅇ (소득공제 한도)	ㅇ 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6천만원	**500만원**
6천만원~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24. 12. 31. 개정)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2024. 12. 31. 개정)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025. 3. 14. 개정)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2025. 3. 14. 신설)
4.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2025. 3. 14. 호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25. 3. 14. 법률 제207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중략〉

제11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이하 생략〉

14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소득법 §59의2①)

개 정 전	개 정 후
□ 자녀세액공제	□ 공제금액 확대
ㅇ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ㅇ (좌 동)
ㅇ (공제금액)	ㅇ (공제금액)
- (1명) 15만원	- (1명) **25만원**
- (2명) 35만원	- (2명) **55만원**
- (3명 이상) 35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3명 이상) **55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40만원**

〈개정이유〉 출산·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소득세법 제59조의 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23. 12. 31. 개정)
1.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024. 12. 31. 개정)
2. 2명인 경우: 연 55만원 (2024. 12. 31. 개정)
3.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2024.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칙 (2023. 12. 31. 법률 제199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중략〉

제7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15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소득령 §40의2)

개 정 전	개 정 후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추가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ㅇ (좌 동)
ㅇ 추가납입 가능 항목	
❶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❷ 1주택 고령가구* 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다운사이징 차액	
*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추 가〉	❸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차익

구 분	내 용
대상자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ⅰ)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 ⅱ)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부동산	10년 이상 보유한 국내 토지 또는 건물(주택 포함)
납입한도	Min(대상부동산 양도차익, 1억원)
납입기간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사후관리	납입당시 요건 미충족 확인시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음

※ ❷·❸ 합산 납입한도 : 생애누적 최대 1억원

〈개정이유〉 부동산 연금화 유도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연금계좌 등】**

〈중략〉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 3 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 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 (2020. 2. 11. 개정)

1. 다음 각 목의 금액(다목 및 라목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총 누적금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2025. 2. 28. 개정)

〈중략〉

라. 국내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연금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2025. 2. 28. 신설)

1) 연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2025. 2. 28. 신설)
2) 연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것 (2025. 2. 28. 신설)
3) 연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연금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025. 2. 28. 신설)
4) 연금부동산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을 연금부동산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2025. 2. 28. 신설)

〈중략〉

⑦ 거주자는 주택차액 또는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차액등"이라 한다)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5. 2. 28. 개정)

1. 연금주택 또는 연금부동산 매매계약서 (2025. 2. 28. 개정)
2. 축소주택 매매계약서(축소주택을 매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2023. 2. 28. 신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023. 2. 28. 신설)

⑧ 거주자가 주택차액등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입일부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2025. 2. 28. 개정)

1. 주택차액등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당시 제2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25. 2. 28. 개정)
2.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연금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2023. 2. 28. 신설)

⑨ 국세청장은 주택차액등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연금계좌취급자는 이를 해당 거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025. 2. 28. 개정)

⑩ 연금계좌취급자는 제9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제8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 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금과 그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거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는 그 반환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2025. 2. 28. 개정)

⑪ 1주택을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비율만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2항 제1호 다목·라목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주택을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함께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2항 제1호 다목 2) 및 같은 호 라목 2)를 적용한다. (2025. 2. 2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중략〉

제7조 【연금부동산 양도차익의 연금계좌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2 제2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금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16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

(소득법 §59의4⑧)

개 정 전	개 정 후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적용기한 종료

구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3천만원 초과분 (‘24.1.1.~’24.12.31.)	40%

구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개정이유〉 고액 기부에 대한 한시적 특례인 점 감안

관련법조문

•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중략〉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은 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2023. 12. 31. 개정)

〈이하 생략〉

17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조특법 §58①)

개 정 전	개 정 후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 공제적용 기부금 한도 상향
ㅇ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ㅇ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기부금 ×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11만원 + 10만원 초과분* × 15% * 사업자는 이월결손금 공제 후 필요경비 산입	ㅇ (좌 동)
ㅇ (기부 · 공제한도) 500만원	ㅇ 500만원 → **2,000만원**

〈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2021. 12. 28. 신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021. 12. 28. 신설)
2.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2024.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24. 12. 31. 법률 제206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중략〉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18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간 구체화
(조특법 §58, 조특령 §54)

개 정 전	개 정 후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ㅇ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ㅇ (좌 동)
ㅇ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기부금 ×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11만원 + 10만원 초과분 × 15%	- (10만원 초과) 11만원 + 10만원 초과분 × 15%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0%)**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기부한 경우로 한정
ㅇ (기부 · 공제한도) 2,000만원	ㅇ (좌 동)
〈신 설〉	□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적용기간 규정 ㅇ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공제율 상향 적용

〈개정이유〉 특별재난지역 지원 확대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2021. 12. 28. 신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021. 12. 28. 신설)
2.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

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2025. 3. 14.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25. 3. 14. 법률 제207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중략〉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25. 6. 30. 대통령령 제356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19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

(소득령 §80①)

개 정 전	개 정 후
□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노동조합** 회비의 범위 * 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 퇴직자 노조회비에 대한 적용요건 완화
ㅇ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노조회비	ㅇ (좌 동)
〈추 가〉	- 직전 연도 결산결과 공표 전 퇴직자의 경우 전전 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경우 포함

〈개정이유〉 퇴직자에 대한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2021. 2. 17. 제목개정)**

①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21. 2. 17. 개정)

〈중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2010. 2. 18. 개정)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단위노동조합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이라 한다)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2023. 9. 26.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이하 이 목에서 "단위노동조합등결산결과"라 한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 9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해당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결산결과가 공표되기 전에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이 경우 단위노동조합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25. 2. 28. 개정)

2) 1)에 따른 단위노동조합등으로부터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의 조합비를 재원으로 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교부받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이하 이 목에서 "연합단체등결산결과"라 한다)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 9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해당 과세기간에 연합단체등결산결과가 공표되기 전에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연합단체등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이 경우 그 교부받은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25. 2. 2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중략〉

제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노조회비 기부금 공제 요건]
1. 재직자
→ 2025년 귀속 노조회비를 기부금으로 공제받으려면
노동조합의 2024년 귀속 결산결과가 공시되어야 함.

2. 퇴직자
→ 결산결과 공시 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2025년에 퇴직할 당시, 전전연도인 2023년 귀속 노동조합의 결산결과가 공시되어 있다면 공제 가능함.

20 혼인무효 시 혼인세액공제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등

(조특령 §94)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 가산세 면제 범위 및 이자상당액 산정 ○ (가산세) 무효확인의 소 확정 후 3개월 내 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이자상당액) 50만원 × ❶ × ❷ ❶ 종합소득산출세액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수정 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 ❷ 「국기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 (1일 0.022%)
〈신 설〉	□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절차) ❶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는 제출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❷ 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되는 사업 소득이 있는 자는 제출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및 혼인세액공제 집행규정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025. 2. 28. 신설)

② 법 제9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25. 2. 28. 신설)

1.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92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025. 2. 28. 신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4에 따른 율 (2025. 2. 28. 신설)

③ 법 제92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이하 이 항에서 "신고서"라 한다)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5. 2. 28. 신설)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혼인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2025. 2. 28. 신설)

2.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것.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2025년 4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2025. 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1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혼인세액공제 추가

(농특령 §4⑦(1))

개 정 전	개 정 후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	□ 비과세 대상 조정
ㅇ 국가·지자체, 농어업인, 중소기업, 비영리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감면 등	ㅇ (좌 동)
ㅇ 그 밖의 정책목적에 의한 감면	ㅇ 비과세 대상 추가
- R&D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 (좌 동)
〈추 가〉	- 혼인세액공제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⑦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말한다. (2022. 2. 15.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 2, 제12조, 제12조의 2,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 2, 제18조, 제18조의 2, 제18조의 3, 제19조 제2항, 제29조의 6, 제30조, 제30조의 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64조, 제76조 제1항, 제92조, 제95조의 2, 제98조의 3, 제98조의 5, 제99조의 9, 제99조의 11, 제104조의 8제1항·제3항, 제104조의 21, 제104조의 24, 제104조의 28, 제104조의 31, 제118조의 2, 제121조의 2부터 제121조의 4까지, 제121조의 13, 제126조의 2, 제126조의 6 및 제126조의 7 제9항에 따른 감면 (2025. 2. 28. 개정)
〈이하 생략〉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부칙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60호)**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② 제4조 제7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061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22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소득법 §150③·§169, 소득령 §221①)

개 정 전	개 정 후
□ 납세조합* 원천징수 제도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세액공제·교부금 합리화
ㅇ (징수·납부) 납세조합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납부(다음 달 10일까지) * (근로자) 국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복식부기 의무자 제외), 노점상인	ㅇ (좌 동)
ㅇ (조합 교부금)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2~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 (국세청 고시) 소득세액의 2%	ㅇ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소득세액의 2~10%→1~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유지 (사업자) 교부금 폐지
ㅇ (조합원 세액공제) 매월 소득세액의 5%*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 (적용기한) '24.12.31.	ㅇ 근로자 공제율 축소: 소득세액의 5% → **3%**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유지 - (근로자) '27.12.31. (사업자)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납세조합 세액공제·교부금 지원수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소득세법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③ 제149조 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 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 2 및 제138조의 예

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2024.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4.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법 제150조에 따라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납세조합이 징수·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등을 고려하여 해당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수에 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025. 2. 2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칙 (2024. 12. 31. 법률 제206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4조【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50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에 관하여는 제16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3조【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청구한 교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생략〉

23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소득법 §61②)

개 정 전	개 정 후
□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
ㅇ 다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ㅇ (좌 동)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표준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 (좌 동)
〈추 가〉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개정이유〉 세액공제 적용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중략〉

② 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 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 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 4 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 4 제4항 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 4 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24.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칙 (2024. 12. 31. 법률 제206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24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보유자) 소득세 감면

(조특령 §16①)

개 정 전	개 정 후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확대
ㅇ (감면대상) ❶, ❷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❶, ❷, 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❶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 제공하는 자 * 계약금액이 30만 달러 이상인 계약 ❷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연계 · 이공계 · 의학계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외 대학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거나 교수 체류 자격등이 있는 자	ㅇ (좌 동)
〈추 가〉	❸「첨단산업인재혁신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로서 산업부 장관이 기재부·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감면율) 50% ㅇ (감면기간) 최초 근로제공일 부터 10년 ㅇ (적용기한) ‘26.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우수 해외인재 확보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2025.2.28.) 이후 우수 해외인재 인증 받은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중략〉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2025. 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8조【소득세 감면 대상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우수 해외인재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25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9)

개 정 전	개 정 후
ㅇ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적용기한 연장
*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최대주주 등 제외	
- (감면대상소득)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 (좌 동)
- (감면율) 소득세 50% 상당 세액감면	
- (적용기한) '24.12.31.	- '27.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성과공유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24.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24. 12. 31. 법률 제206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5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생략〉

26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조특법 §29의6①)

개 정 전	개 정 후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범위 위임근거 마련, 감면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ㅇ 성과보상기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ㅇ (감면요건) 성과보상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중소·중견 기업 근로자	ㅇ 5년 이상 → 3년 이상
ㅇ (감면율) - (청년)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 (그 외)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ㅇ (좌 동)
ㅇ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ㅇ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한 경우	ㅇ '27.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개정이유〉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 3 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24.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24. 12. 31. 법률 제206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6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제사업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 및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29조의 6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생략〉

27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요건 보완

(조특법 §29의6, 조특령 §26의6)

개 정 전	개 정 후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에 대해 소득세 감면 적용
ㅇ (적용요건) 성과보상기금에 3년 이상 가입한 중소·중견 기업 근로자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ㅇ (좌 동)
〈신 설〉	- (예외) **폐업 · 해산 등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ㅇ (감면율) - (청년)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 (그 외)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7.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개정이유〉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요건 합리화
〈시행시기〉 법 시행일(2025.3.14.)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 3 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한다. (2025. 3. 14. 단서신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⑦ 법 제29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5. 6. 30. 신설)

1.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2025. 6. 30. 신설)
2.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2025. 6.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25. 3. 14. 법률 제207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중략〉
제5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25. 6. 30. 대통령령 제356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2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정비

(조특령 §27③)

개 정 전	개 정 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농어업등 23개 업종)	□ 대상 업종 정비
ㅇ 운수 및 창고업	ㅇ (좌 동)
〈제 외〉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ㅇ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ㅇ (좌 동)
〈제 외〉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ㅇ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ㅇ (좌 동)
〈제 외〉	- 수의업
ㅇ 부동산업	ㅇ (좌 동)
〈제 외〉	- 부동산 임대업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2025.2.28.) 이후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략〉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

〈중략〉

8. 운수 및 창고업(「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한다) (2025. 2. 28. 개정)

〈중략〉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2025. 2. 28. 개정)

11.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2025. 2. 28. 개정)

〈중략〉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 (2025. 2. 28.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29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조특법 §29의8·§30)

개 정 전	개 정 후
□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여성 *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❶ (성별) 여성	〈삭 제〉
❷ (업종)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동일	❷ 1년 이상 근무 (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 폐지)
❸ (퇴직사유)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❸ 퇴직사유 추가 - (좌 동)
〈추 가〉	- 가족돌봄
❹ (퇴직기간)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일 것	❹ (좌 동)

〈개정이유〉 경력단절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중소기업취업자감면) 법 시행(2025.3.14.) 이후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22. 12. 31. 신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025. 3. 14. 개정)

〈중략〉

② 제1항 제1호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025. 3. 14. 신설)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

교육·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025. 3. 14. 신설)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2025. 3. 14. 신설)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025. 3. 14. 신설)

〈중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 8 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 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2025. 3. 14.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25. 3. 14. 법률 제207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6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9조의 8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한 경력단절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29조의 8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30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조특령 §26의8·§27)

개 정 전	개 정 후
□ 퇴직사유	□ 퇴직사유 추가
ㅇ ❶결혼·❷임신·❸출산·❹육아·❺자녀교육 ❶ 퇴직 1년 이내 혼인 ❷ 퇴직 2년 이내 임신 또는 난임시술 ❸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 ❹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❺ 퇴직일 당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ㅇ (좌 동)
〈추 가〉	ㅇ (장애인* 자녀 육아) 퇴직일 당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경우 ㅇ (가족돌봄) 퇴직일 당시 고령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 * (고령) 70세 이상 (장애)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경우

〈개정이유〉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관련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8【통합고용세액공제】**

⑫ 법 제29조의 8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 가족돌봄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5. 6. 30. 신설)

1. 제26조의 3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5. 6. 30. 신설)
2. 퇴직일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2025. 6. 30. 신설)
3. 퇴직일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2025. 6. 30. 신설)
   가. 70세 이상 (2025. 6. 30. 신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025. 6. 30. 신설)

〈중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025. 6. 30. 개정)

〈중략〉

4. 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2025. 6. 30.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25. 6. 30. 대통령령 제356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그밖의 개정사항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

개 정 전	개 정 후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ㅇ (시행일) '25.1.1.	□ 폐 지* *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

2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소득령 §4)

개 정 전	개 정 후
□ 거주자의 정의	□ 거소를 둔 기간(183일) 계산 시 직전 과세기간 고려
ㅇ 국내에 주소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ㅇ (좌 동)
〈신 설〉	-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포함

〈개정이유〉 판정기준 보완
〈적용시기〉 (거주자 정의)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중략〉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2025. 2. 28. 개정)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2025. 2. 28. 개정)
1.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2025. 2. 28. 신설)
2.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2025. 2. 28.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3항, 제53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제187조의 3 제2항, 제202조의 2 제4항, 제203조, 제216조의 2 제1항 및 별표 3의 3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중략〉

제2조【거주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3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안)

(법률 제19196호 소득법 §81의11·부칙, 법률 19193호 법인법 §75의7·부칙)

개 정 전	개 정 후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시행시기 유예
○ 상용근로소득: 매월	○ (좌 동)
○ 시행시기 - **'26.1.1. 이후**	○ 시행시기 - **'27.1.1. 이후**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4대보험

02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및 상한액 조정

개 정 전	개 정 후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및 상한액 조정**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및 상한액 조정**
ㅇ 하한액 : 390,000	ㅇ 하한액 : 400,000
ㅇ 상한액 : 6,170,000	ㅇ 상한액 : 6,370,000
- 적용기간 : 2024.7.1. ~ 2025.6.30.	- 적용기간 : 2025.7.1. ~ 2026.6.30.

〈적용시기〉 '25. 7월분부터 '26. 6월분까지 적용

관련법조문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4호, 2025. 2. 3. 일부개정)**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00천원
   나. 상한액 : 6,370천원
2. 적용기간 : 2025년도 7월분부터 2026년도 6월분까지

• **부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호, 2025.2.3.】**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건강보험 보수월액 보험료 및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조정

개 정 전	개 정 후
□ **건강보험 월별 보험료 상한액 조정** o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8,481,420원 o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상한액 : 4,240,710원	□ **건강보험 월별 보험료 상한액 조정** o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9,008,340원 o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상한액 : 4,504,170원

〈적용시기〉 '25.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관련법조문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9호, 2024. 12. 30., 일부개정)**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9,008,34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4,504,170원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부칙 〈제2024-289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법

03

1 최저임금액 인상

개 정 전	개 정 후
□ 최저임금액 시간급 9,860원 ㅇ 일급기준 78,880원 (8시간 기준) ㅇ 월급기준 2,060,740원 (209시간 기준)	□ 최저임금액 시간급 10,030원 ㅇ 일급기준 80,240원 (8시간 기준) ㅇ 월급기준 2,096,270원 (209시간 기준)

〈개정이유〉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5년 최저임금 인상
〈적용시기〉 2025. 1. 1. ~ 2025. 12. 31. 적용

관련법조문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제정 2024. 8. 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50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10,030원

◈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5. 1. 1.~2025. 12. 31.

지은이 세무사 조현정

펴낸곳 (주)에이티앤피파트너즈

발행일 2025.9.30.

문의전화 (02) 704-9717

팩스 (02) 704-9769

홈페이지 http://atnp.co.kr

무단 복사 · 복제 · 전제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